

## 1. 개정 이유

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고, 양식의 목적에 맞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이 개정(2020.12.29.공포, 2021.6.30.시행)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또한, 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신청과정에서 수급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시 제출사항과 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용어변경(안 제24조 등)
- 나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(안 제6조 등)
- 다. 현장조사서 위임근거 조항 변경(안 제42조)
- 라. 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신청과정에서 수급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구체화(안 제21조제3항)
- 마.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시 제출 사항 개선(안 제40조)
- 바. 장기요양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(별표 3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”를“(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이하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)”를 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이하 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를 각각 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를 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장기요양인정서”를 “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 중 “장기요양요원이”를 “그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가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통지받은 날
3.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요지

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1조제3항”을 “법 제61조제4항”

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표에 제1호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신 고 인  | 지 급 기 준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|--|
|  | 징수금              | 포상금  |
| 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<br>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<br>나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‘부정인정자’라 한다)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<br>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<br>2)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|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| 징수금 × 20/100   |
|  |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| 200만원+[(징수금- 1천만원) × 15/100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2천만원 초과          | 350만원+[(징수금- 2천만원) × 10/100]<br>다만,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 |
|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<br>가. 장기요양기관 관련자<br>1)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<br>2) 복지용구 제조업자·판매업자   |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| 징수금 × 30/100   |
|  | 500만원 초과 2천500만원 | 150만원+[(징수금-   |

|   |     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| 이하              | 500만원) × 20/100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2천500만원초과       | 2억원의 범위에서<br>550만원 + [(징수금 - 2천500만원) × 10/100] |
| 나. 장기요양기관 이용자: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|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| 1만원   |
|   | 2만5천원 초과        | 500만원의 범위에서 징수금 × 40/100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그 밖의 신고인: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| 징수금 × 20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| 2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× 15/100]                 |
|   | 2천만원 초과         |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 + [(징수금 - 2천만원) × 10/100]     |

별표 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:

1. “징수금”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(부정인정자를 포함한다)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.
2.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.

3.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를 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를 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의3서식, 같은 서식 뒤쪽, 제1항, 기호(-), 기호(-) 및 기호(-) 중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를 각각 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의4서식, 같은 서식 뒤쪽, 제1항, 기호(-), 기호(-) 및 기호(-) 중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를 각각 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”로 한다.

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3호서식 중 “신청”을 “청구”로 한다.

별지 제35호서식 신청인 중 “장기요양기관의 신고인”을 “신고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1.6.30.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심 사 청 구 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| 접수일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| 60일           |
| ① 청구인<br>(처분을 받은 자) | 성명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| (전화번호: ) |               |
| ② 처분의 요지            | (처분을 한 분사무소: ) |          | (여백부족시 별지 사용) |
| ③ 처분이 있는(도달한) 날     | 년              | 월        | 일             |
| ④ 심사청구의<br>취지와 이유   | (여백부족시 별지 사용)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청구인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:

청구인과의 관계:

주소:

전화번호:

**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**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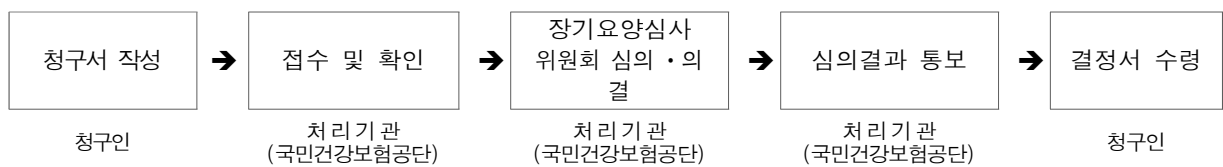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

###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①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, 장기요양급여, 부당이득, 장기요양급여비용,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적습니다(법인인 경우 법인명, 장기요양기관기호, 기관 주소를 적습니다).
-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.  
※ (처분을 한 분사무소:           ) : 해당 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, 지사를 적습니다.
- ③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.
- ④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.

### 처 리 절 차



## 재심사청구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   | 접수일        | 처리기간   | 60일           |
| 청구인      | 성명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전화번호(주택)   | (휴대전화) | 전자우편주소        |
|          | 주소 우편번호( ) |        |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|
| 처분을 받은 자 | 성명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주소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피청구인     | 국민건강보험공단   | 재결청    | 보건복지부         |

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짜

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요지

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(여백부족시 별지 사용)

|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| 고지 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

증거서류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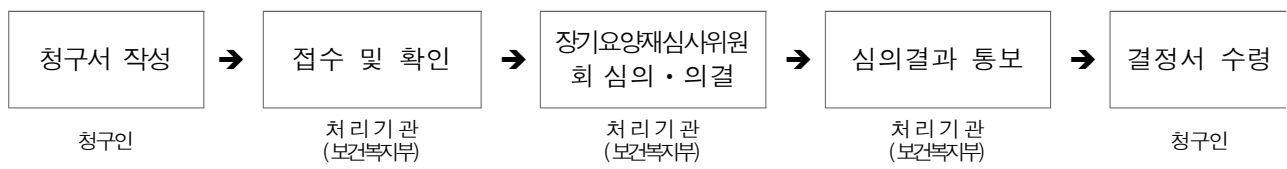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재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
### 작성방법

1. “처분을 받은 자”가 “청구인”과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.
2. “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요지”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.
3. “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”란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.
4. “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” 및 “고지내용”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청구 안내 유무 및 그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.
5. “증거서류”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,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(또는 서명)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처리절차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6조(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 ① (생략)</p> <p>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(이하 “장기요양인정서”라 한다)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<u>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</u>(이하 “<u>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</u>”)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</p> <p>③ 공단은 <u>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</u>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④ 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<u>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</u>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</p> | <p>제6조(장기요양인정서 및 <u>개인별</u> 장기요양이용계획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 <u>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</u> (이하 “<u>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</u>”라 한다)-----<br/>--.</p> <p>③ ----- <u>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</u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br/>----- <u>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</u>-----<br/>-----<br/>----.</p> <p>제16조(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/p> |

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1조(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) ① · 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면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4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)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-----  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  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  
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 
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 
요청할 수 있다.

1.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, 대  
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 
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 
받은 행정처분의 내용

2. ~ 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40조(재심사청구의 방식 등) ①  
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 
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
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재  
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 
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 
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  
출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원처분을 한 자(공단의 분사  
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 
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)

3.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  
었던 것을 알게 된 날

4. ~ 7.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그 기관에 종사하거  
나 종사하려는 자가 -----  
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재심사청구의 방식 등) ①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  
를 통지받은 날

3.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서  
의 요지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|  |  |
|--|--|
|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42조(보고 및 검사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법 제61조제3항</u>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보고 및 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61조제4항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|